

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기간(제43조제1항 관련)

1. 수수료의 금액

가. 품종목록의 등재신청에 관한 수수료

- 1) 품종목록 등재신청: 품종당 3만8천원
- 2) 등재심사

항목	수수료
서류심사	품종당 5만원
재배심사	품종당 연간 50만원. 다만, 「식물신품종 보호법」에 따른 품종보호 출원과 품종목록의 등재신청을 같이 하는 경우는 품종당 10만원으로 한다.

나.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 연장신청 수수료: 품종당 2만원

다. 국가보증에 관한 수수료

- 1) 국가보증 신청: 품종당 1천5백원
- 2) 국가보증검사 결과에 대한 재검사 신청: 품종당 1천5백원
- 3) 국가보증검사

항목	수수료
포장(圃場)검사	10아르(a)당 2만원
종자검사	품종당 5만원
종자 재검사	품종당 5만원

라. 보증서 발급에 관한 수수료

- 1) 국문: 무료
- 2) 영문: 품종당 5천원

마.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종자의 신고에 관한 수수료: 품종당(씨앗으로 증식하는 1년생 화훼류의 경우 25품종 단위당) 3만원. 다만,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2만원으로 한다.

바. 수입적응성시험 신청 수수료

산림용종자: 품종당 5만원

사. 종자검정 신청 수수료

항 목	수 수 료
정립, 피해립, 이중종자, 이물	항목별 건당 8,600원
발아율	건당 30,800원
수분	건당 12,000원
과수묘목 바이러스	건당 20,000원
과수묘목 바이로이드	건당 10,000원

아. 시험·분석 신청에 관한 수수료

- 1) 시험·분석 신청: 품종당 1천5백원
- 2) 시험·분석

항목	수수료
재배시험	품종당 50만원
유전자분석	품종당 30만원
종자품질분석	품종당 5만원

자. 분쟁조정 신청에 관한 수수료

- 1) 분쟁조정 신청: 품종당 1천5백원
- 2) 분쟁조정 관련 시험·분석

항목	수수료
재배시험	품종당 50만원
유전자분석	품종당 30만원
종자품질분석	품종당 5만원

차. 무병화인증기관 지정·갱신 신청 수수료: 건당 30만원

카. 무병화인증·갱신 신청 수수료

- 1) 무병화인증 수수료는 인증심사를 위한 서류심사, 현장심사, 품질검사비용을 합하여 산정한다.

항 목	수수료
서류심사	신청건당 5만원
현장심사	심사료 20만원+10아르(a)당 2만원
품질검사 (바이러스·바이로이드 실내검사)	검사료 20만원+점당 4만원

2) 무병화인증 수수료 반환 기준

항 목	반환 사유		반환금액
심사·검사비	서류심사, 현장심사, 품질검사	실시 전	전액반환
		실시 후	반환대상 아님

타. 그 밖의 수수료

- 1) 각종 서류의 등본·초본 또는 증명의 신청: 1건당 5백원. 다만, 복사가 필요한 첨부물이 있는 경우에는 1면당 1백원씩을 더한다.
- 2) 각종 서류의 사본 신청: 1면당 2백원

2. 수수료의 납부기간

수수료는 다음 각 목의 납부기간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.

가. 제1호가목2)의 등재심사 수수료: 수수료 납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

나. 제1호다목3)의 종자검사 수수료: 포장검사 합격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

다. 제1호사목2)의 시험·분석 수수료 및 같은 호 아목2)의 시험·분석 수수료: 납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

라. 그 밖의 수수료: 신청 시